

도민과 함께 **청정전남**을 지키겠습니다!

“보건의료인들의 헌신과 적극적인 방역대책에 협조해주신 도민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.”

COVID-19
코로나19 전라남도 상황판 (2021년 6월 11일 오전 10시 기준)

확진자

전국 146,859	전남 1,542 병원격리 114명 격리해제 1,413명 사망 15명
---------------	--

검사현황

검사결과(음성) 1,513,324	검사결과(양성) 1,542 해외유입 90명	검사중 1,462
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

자가 격리자

격리중 1,554	격리해제 44,791
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

전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**개편안 연장 적용**

위 개편안은 5. 24.(월) ~ 6. 13.(일)까지 3주간 적용됩니다.

모임 · 행사

- 7명부터 시작모임 금지
- 단, 유흥시설 5종, 홀덤펍, 노래연습장
사적모임은 4명까지 제한
-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7명 이상
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
- 300명 이상 모임·행사의 경우
지자체 신고·협의
- ※ 집회·시위 300명 이상금지

중점관리시설

- 유흥시설 5종, 홀덤펍
-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(수기명부 작성 불가)
- 시설면적 6m²당 1명 인원 제한
- ※ 클럽, 나이트는 8m²당 1명
-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: 시설면적 6m²당
1명 인원 제한
- 식당, 카페 : 2인 이상이 커피·음료류, 디저트류만을
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
제한(강력권고)

일반 · 기타관리시설

- 목욕장업·이미용업·실내체육시설 등
- : 시설면적 6m²당 1명 인원 제한
- 노래연습장
- 시설면적 6m²당 1명 인원 제한
-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(수기명부 작성 불가)
- 결혼식장, 장례식장, 돌잔치 전문점
- : 시설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

일상 · 사회경제적 활동

- 마스크 착용 의무화
- (실내)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전체 착용
- (실외) 2m 이상 거리 유지 불가시,
다중이용시설 등 착용
- 정류예배 · 미사 · 법회 · 시일식 등
좌석 수 30% 이내 인원 참여
- 종교시설 주관 모임 · 식사 금지

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

마스크
착용 의무

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
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



코로나(COVID-19) 백신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

자세히보기



안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

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

**안내사항 꼭
기억해 주세요!**

질병관리청 **KMA** 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


행정안전부 코로나19 안전신고



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방역조치 비교표



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



※ 코로나19 의심 신고
061-120(민생애로종합상담센터), 1339(질병관리청) 또는 관할 시군 보건소

일일상황보고



선별진료소 현황



예방행동수칙



전라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홈페이지



코로나19 심리지원



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Q&A



코로나19 날짜별 발생 현황 (지역감염 / 해외유입)

계	06.01.(화) 까지	06.02.(수)	06.03.(목)	06.04.(금)	06.05.(토)	06.06.(일)	06.07.(월)
1542명 (1460 / 82)	1396 / 82	3 / 0	12 / 0	14 / 0	9 / 0	3 / 0	8 / 0
	06.08.(화)	06.09.(수)	06.10.(목)	06.11.(금)			
	6 / 0	4 / 0	5 / 0	0 / 0			

코로나19 시군별 확진자 발생 현황

목포시	여수시	순천시	나주시	광양시	담양군	곡성군	구례군
91	187	417	94	129	34	13	7
고흥군	보성군	화순군	장흥군	강진군	해남군	영암군	무안군
64	15	86	11	5	23	74	40
함평군	영광군	장성군	완도군	진도군	신안군	해외유입	
46	18	58	13	12	15	90	

중앙방역대책본부

"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(1판)(20.10.7)"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함

- (공개 기간) : 정보 확인 시 ~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
- (개인정보) : 성별, 연령, 국적, 거주지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읍·면·동 단위 이하 정보는 공개하지 않음
- (시간) : 코로나19는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공개함
- (장소 · 이동수단) : 장소 목록 형태로 정보를 공개함,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음

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 다운로드 ↓

확진자 현황

확진자 이동경로

